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, 2006.9.27, 2006고단2956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 신태훈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정정훈

【주문】

】 피고인을 벌금 2,000,000원에 처한다.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